한국체육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

제정 2000. 6.22. 규칙 제319호 개정 2005.10.10. 규칙 제463호 2010. 3. 5. 규칙 제517호 2012. 3.28. 규칙 제596호 2014. 1.28. 규칙 제644호 2017. 2.24. 규정 제732호 2020.11.23. 규정 제828호 2021. 7. 1. 규정 제8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강의의 구분과 정의) 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전문실기수업 : 본교의 육성종목 수업
- 2. 보통강의 : 제1호 이외의 평상수업
- 3. 특별강의 : 공개강좌 등 교과과정에서 정한 수업 이외의 강의 · 강연
- 4. 초과강의 :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
- 5. 시간강의 : 전임교원 이외의 강사 등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 〈개정 2021.7.1.〉 **제3조(강의책임시간)** ① 전임교원의 주당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한다.
 - ② 계약제임용교원의 책임시간은 계약서상의 계약시간을 책임시간으로 한다.
 - ③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일부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조(강사료의 지급) ① 제2조제4호의 초과강의에 대한 강사료(이하 "초과강사료"라한다)는 실제로 강의한 시수가 책임시간을 초과한 교원에게 초과된 시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의 강의시간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5호의 시간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시간강의를 담당한자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비상 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인하여 임시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휴업기간 중 강사가 담당할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본다.
 - ③ 학칙 제30조의2의 집중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 제5조(강사료의 계산) ① 전임교원 이외의 강사료는 매학기 15주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전임교원의 강의 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단위로 계산하며, 초과강사료는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신규임용·퇴직·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한 학기만 강의를 담당한 전임교원은 학기별로 초과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수업상황보고) 각 학과장은 매월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별지 서식의 "수업상황 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 **제7조(강의시간의 제한)**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14시간(전문실기 15시간) 이내로 한다.

- 단, 부득이하여 담당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7.1.>
-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액)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기준액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액을 증액할 수 있다.
 - 1. 외국인 및 국내저명인사의 강사료는 기준액의 5배 이내 〈개정 2021.7.1.〉
 - 2. 강의에 출강하기 위하여 숙박을 요하는 경우의 강사료는 기준액의 3배 이내 〈개정 2021.7.1.〉
 - 3. 공개강좌 등 교과과정에서 정한 수업 이외의 특별강의에 대한 강사료는 강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 제9조(강사료 지급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 교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1. 시험시간
 - 2. 기타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때
 - 3. 국내 훈련 및 출전(학생동행시)
 - 4. 삭제
 - 5. 정규 강의시간 이외에 총장이 위촉하는 바에 따라 다수의 학생 또는 학생단체를 정기적으로 지도할 때
 - ② 제1호의 경우에는 각 대학의 실지 시험시간표에 따라 근무한 교원(강사 포함)에 한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7.1.>
- 제10조(외국인 및 명예교수 초빙강사료) ① 외국인 및 명예교수로 초빙에 의하여 항시 근무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해당 봉급액과 교원교재연구비지급 규정에 의한 해당 교재연구비를 강사료로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재외한국인 학자 유치기획에 의하여 유치한 교수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한 해당봉급액과 교육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한 각종 해당 수당액을 강사료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강사료는 총장이 결정한다.
- 제11조(강사료 지급기일) ① 강사료는 특별강사료를 제외하고는 당월분을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되, 당해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단, 전임교원의 초과강사료는 당해 학년도 2학기 종강 후에 지급한다.
- ② 총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간강사의 자격)** ① 삭제〈2021.7.1.〉
 - ② 삭제 <2021.7.1.>
- 제13조(시간강사의 위촉) ① 삭제〈2021.7.1.〉
 - ② 삭제 〈2021.7.1.〉
 - ③ 삭제 〈2021.7.1.〉

부 칙(규칙 제319호, 2000. 6.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43호, 2001, 9, 1,)

이 규정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396호, 2003, 5,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463호, 2005,10,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17호, 2010. 3.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96호, 2012. 3.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644호, 2014, 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 제3항은 201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732호, 2017, 2,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한국체육대학교 강사료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한다.

부 칙(제846호, 2021. 7.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수업상황보고서</u>

학과명 : 월분

구분 ①	성명 ②	담당교과목 ③	주당 교과목 담당시수④	휴.결강 시수(5)	보강 <u>시수</u> ⑥	당월분 총 강의시수⑦

<작성요령>

- 1. ①란은 전임교원, 강사로 기재한다.
- 2. ③란은 담당교과목을 기재한다.
- 3. ④란은 소속 학과에서 강의한 주당 담당시수를 기재한다.
- 4. ⑤란은 해당원의 휴. 결강시수를 기재한다.
- 5. ⑥란은 해당월의 보강시수를 기재한다.
- 6. ⑦ 당월분의 총 강의시수(⑦=④×강의주수-⑤+⑥)를 산출하여 기재한다.

20	•	•	
	학과장		(서명)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